

행정자치부 주 의

제 목 인사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진주시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3항, 제7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민간의 위촉위원¹⁾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제1항에서는 여성위원을 4명 이상,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2명 및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10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민간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여성위원 2명 이상, 지방의회 추천 위촉위원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인사위원회 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자격요건 ①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③ 공무원(국가공무원 포함)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④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⑤ 상장 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사건에 대한 심의·의결하고 있는데,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관계 규정을 위배하여 부적법한 경우 해당 징계처분은 위법한 징계의결을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에 해당함

그러나 진주시는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 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제1항에 따른 여성의원 2명 이상, 지방의회 추천 위촉위원 1명을 포함하지 않는 채 인사위원회 회의를 부적정하게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인사위원회의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조치할 사항 진주시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위원의 수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